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소 확인 불가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반 장소 및 일시	위반내용	반송사유	과태료 금액
부*석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서로 6*번길 5*	표선면 표선리 40-5, 당포식당 앞 도로 (2017. 8. 23. 19:30)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이사불명	587,000원

나. 공시송달 기간 : 2019. 1. 16. ~ 2019. 1. 31.

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표선면사무소 건설팀(☎064-760-4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15.

표 선 면

